청주테크노폴리스 하트리움 더 메트로(S4블록) 입주자모집공고



애플앱스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4.12.20.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u>종합저축으로 전환</u>한 경우, 해당 주택의 <u>순위확인서</u> <u>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u>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X·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43-225-9177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	사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1년	없음	적용	공공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12.20.(금)	2024.12.30.(월) ~ 2024.12.31.(화)	2025.01.02.(목)	2025.01.03.(금)	2025.01.09.(목)	2025.01.10.(금) ~ 2025.01.18.(토)	2025.01.20.(월) ~ 2025.01.23.(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u>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u>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2.18.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	궁급			일반	일반공급		
선정사력	이전기관(산업단지)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불필요	6개월 이성	b, 지역별·면적별 예	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 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 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이전기관(산업단지) 특별공급을 제외한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 이전기관(산업단지) 특별공급의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 제8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또한, 이전기관(산업단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techno.heartrium.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 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0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Χ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단지 유의사항

2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2.20.(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를 포함한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 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12.30.(월) ~ 2024.12.31.(화) 2025.01.02.(목) 2025.01.03.(금)			2025.01.09.(목)	2025.01.10.(금) ~ 2025.01.18.(토)	2025.01.20.(월) ~ 2025.01.23.(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당사 견본주택(방문 제출)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이전기관(산업단지)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입니다.
-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수도권	외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청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 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 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의무화로「인지세법」제3조에 의거 공급계약서(전매 포함)는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분양계약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 또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국세상담센터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인지세 납부 관련 추가사항은 계약 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청주시 공동주택과-22536 호(2024. 12. 1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산 12-11 번지 일원(청주테크노폴리스 S4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최고 49층, 4개동 중 공동주택 3개동, 총 599세대 [특별공급 287세대(기관추천 33세대, 다자녀가구 56세대, 신혼부부 62세대,

노부모부양 15세대, 생애최초 65세대, 이전기관(산업단지) 56세대 포함), 일반공급 3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7.EU		도 II 실	0541 TT 71	주	택공급면적((m²)	기타	All OF	UIFILEE	* 7 7			특별	공급 세	대수			OIHLTT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이전 기관	계	일반공급 세대수	
	01	84.9323A	84A	84.9323	30.3854	115.3177	61.9664	177.2841	28.3369	218	21	21	39	6	41	21	149	69	5
	02	84.9234B	84B	84.9234	30.1448	115.0682	61.9600	177.0282	28.3340	128	12	12	23	3	24	12	86	42	3
	03	116.0494A	116A	116.0494	40.2752	156.3246	84.6694	240.9940	38.7189	88	-	8	-	2	-	8	18	70	2
2024000713	04	116.0265B	116B	116.0265	40.5659	156.5924	84.6528	241.2452	38.7112	37	-	3	-	1	-	3	7	30	1
2024000713	05	134.7221	134	134.7221	45.0245	179.7466	98.2930	278.0396	44.9489	125	-	12	-	3	-	12	27	98	3
	06	216.6983P	216P	216.6983	74.5292	291.2275	158.1028	449.3303	72.2995	1	-	-	-	-	-	-	-	1	-
	07	220.1022P	220P	220.1022	77.0459	297.1481	160.5863	457.7344	73.4352	2	-	-	-	-	-	-	-	2	-
					합 계					599	33	56	62	15	65	56	287	312	14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m², 원)

				공급금	금 액		계약금	t(15%)			중도금	t(60%)			잔금(25%)
약식 표기	층	해당 세대			부가		1차 (10%)	2차 (5%)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
(타입)	구분	수	대지비	건축비	가치세	합계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2025-08-04	2026-02-04	2026-08-04	2027-02-04	2027-09-04	2028-03-04	예정일
	40층~49층	38	148,650,040	318,949,960	-	467,600,000	46,760,000	23,380,000	46,760,000	46,760,000	46,760,000	46,760,000	46,760,000	46,760,000	116,900,000
	30층~39층	50	147,378,440	316,221,560	-	463,600,000	46,360,000	23,180,000	46,360,000	46,360,000	46,360,000	46,360,000	46,360,000	46,360,000	115,900,000
	21층~29층	45	145,471,040	312,128,960	-	457,600,000	45,760,000	22,880,000	45,760,000	45,760,000	45,760,000	45,760,000	45,760,000	45,760,000	114,400,000
044	10층~19층	50	142,832,470	306,467,530	-	449,300,000	44,930,000	22,465,000	44,930,000	44,930,000	44,930,000	44,930,000	44,930,000	44,930,000	112,325,000
84A	6층~9층	20	140,193,900	300,806,100	-	441,000,000	44,100,000	22,05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110,250,000
	5층	5	137,332,800	294,667,200	-	432,000,000	43,200,000	21,6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108,000,000
	4층	5	134,471,700	288,528,300	-	423,000,000	42,300,000	21,15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105,750,000
	3층	5	131,610,600	282,389,400	-	414,000,000	41,400,000	20,7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103,500,000

				공급급	금액		계약금	1 (15%)			중도금	(60%)			잔금(25%)
약식 표기	충 - · ·	해당 세대			부가		1차 (10%)	2차 (5%)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
(타입)	구분	수	대지비	건축비	가치세	합계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2025-08-04	2026-02-04	2026-08-04	2027-02-04	2027-09-04	2028-03-04	예정일
	40층~49층	20	148,650,040	318,949,960	-	467,600,000	46,760,000	23,380,000	46,760,000	46,760,000	46,760,000	46,760,000	46,760,000	46,760,000	116,900,000
	30층~39층	30	147,378,440	316,221,560	-	463,600,000	46,360,000	23,180,000	46,360,000	46,360,000	46,360,000	46,360,000	46,360,000	46,360,000	115,900,000
	21층~29층	27	145,471,040	312,128,960	-	457,600,000	45,760,000	22,880,000	45,760,000	45,760,000	45,760,000	45,760,000	45,760,000	45,760,000	114,400,000
84B	10층~19층	30	142,832,470	306,467,530	-	449,300,000	44,930,000	22,465,000	44,930,000	44,930,000	44,930,000	44,930,000	44,930,000	44,930,000	112,325,000
040	6층~9층	12	140,193,900	300,806,100	-	441,000,000	44,100,000	22,05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110,250,000
	5층	3	137,332,800	294,667,200	-	432,000,000	43,200,000	21,6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108,000,000
	4층	3	134,471,700	288,528,300	-	423,000,000	42,300,000	21,15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105,750,000
	3층	3	131,610,600	282,389,400	-	414,000,000	41,400,000	20,7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103,500,000
	40층~49층	16	185,234,720	394,422,982	39,442,298	619,100,000	61,910,000	30,955,000	61,910,000	61,910,000	61,910,000	61,910,000	61,910,000	61,910,000	154,775,000
	30층~39층	20	184,037,920	391,874,618	39,187,462	615,100,000	61,510,000	30,755,000	61,510,000	61,510,000	61,510,000	61,510,000	61,510,000	61,510,000	153,775,000
	21층~29층	18	182,242,720	388,052,073	38,805,207	609,100,000	60,910,000	30,455,000	60,910,000	60,910,000	60,910,000	60,910,000	60,910,000	60,910,000	152,275,000
1164	10층~19층	20	179,849,120	382,955,345	38,295,535	601,100,000	60,110,000	30,055,000	60,110,000	60,110,000	60,110,000	60,110,000	60,110,000	60,110,000	150,275,000
116A	6층~9층	8	177,455,520	377,858,618	37,785,862	593,100,000	59,310,000	29,655,000	59,310,000	59,310,000	59,310,000	59,310,000	59,310,000	59,310,000	148,275,000
	5층	2	174,463,520	371,487,709	37,148,771	583,100,000	58,310,000	29,155,000	58,310,000	58,310,000	58,310,000	58,310,000	58,310,000	58,310,000	145,775,000
	4층	2	171,471,520	365,116,800	36,511,680	573,100,000	57,310,000	28,655,000	57,310,000	57,310,000	57,310,000	57,310,000	57,310,000	57,310,000	143,275,000
	3층	2	168,479,520	358,745,891	35,874,589	563,100,000	56,310,000	28,155,000	56,310,000	56,310,000	56,310,000	56,310,000	56,310,000	56,310,000	140,775,000
	40층~49층	1	185,234,720	394,422,982	39,442,298	619,100,000	61,910,000	30,955,000	61,910,000	61,910,000	61,910,000	61,910,000	61,910,000	61,910,000	154,775,000
	30층~39층	10	184,037,920	391,874,618	39,187,462	615,100,000	61,510,000	30,755,000	61,510,000	61,510,000	61,510,000	61,510,000	61,510,000	61,510,000	153,775,000
	21층~29층	9	182,242,720	388,052,073	38,805,207	609,100,000	60,910,000	30,455,000	60,910,000	60,910,000	60,910,000	60,910,000	60,910,000	60,910,000	152,275,000
116B	10층~19층	10	179,849,120	382,955,345	38,295,535	601,100,000	60,110,000	30,055,000	60,110,000	60,110,000	60,110,000	60,110,000	60,110,000	60,110,000	150,275,000
1100	6층~9층	4	177,455,520	377,858,618	37,785,862	593,100,000	59,310,000	29,655,000	59,310,000	59,310,000	59,310,000	59,310,000	59,310,000	59,310,000	148,275,000
	5층	1	174,313,920	371,169,164	37,116,916	582,600,000	58,260,000	29,130,000	58,260,000	58,260,000	58,260,000	58,260,000	58,260,000	58,260,000	145,650,000
	4층	1	171,172,320	364,479,709	36,447,971	572,100,000	57,210,000	28,605,000	57,210,000	57,210,000	57,210,000	57,210,000	57,210,000	57,210,000	143,025,000
	3층	1	168,030,720	357,790,255	35,779,025	561,600,000	56,160,000	28,080,000	56,160,000	56,160,000	56,160,000	56,160,000	56,160,000	56,160,000	140,400,000
	40층~49층	17	207,345,600	441,504,000	44,150,400	693,000,000	69,300,000	34,65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173,250,000
	30층~39층	30	206,148,800	438,955,636	43,895,564	689,000,000	68,900,000	34,45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172,250,000
	21층~29층	27	204,353,600	435,133,091	43,513,309	683,000,000	68,300,000	34,150,000	68,300,000	68,300,000	68,300,000	68,300,000	68,300,000	68,300,000	170,750,000
124	10층~19층	30	201,960,000	430,036,364	43,003,636	675,000,000	67,500,000	33,75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168,750,000
134	6층~9층	12	199,566,400	424,939,636	42,493,964	667,000,000	66,700,000	33,350,000	66,700,000	66,700,000	66,700,000	66,700,000	66,700,000	66,700,000	166,750,000
	5층	3	196,275,200	417,931,636	41,793,164	656,000,000	65,600,000	32,800,000	65,600,000	65,600,000	65,600,000	65,600,000	65,600,000	65,600,000	164,000,000
	4층	3	192,984,000	410,923,636	41,092,364	645,000,000	64,500,000	32,25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161,250,000
	3층	3	189,692,800	403,915,636	40,391,564	634,000,000	63,400,000	31,7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158,500,000
216P	최상층	1	361,044,640	768,777,600	76,877,760	1,206,700,000	120,670,000	60,335,000	120,670,000	120,670,000	120,670,000	120,670,000	120,670,000	120,670,000	301,675,000
220P	최상층	2	373,192,160	794,643,491	79,464,349	1,247,300,000	124,730,000	62,365,000	124,730,000	124,730,000	124,730,000	124,730,000	124,730,000	124,730,000	311,825,000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포함), 인지세 등은 미포함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형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 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오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m²)	84.9323A	84.9234B	116.0494A	116.0265B	134.7221	216.6983P	220.1022P
약식표기(타입)	84A	84B	116A	116B	134	216P	220P

■ 공통 유의사항

-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 방식(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으로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및 추가 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단, 계약체결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합계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경우 잔금납부시까지 상호정산할 수 있습니다.(단, 허용오차 범위(2%) 내에는 별도정산하지 않기로 함)
-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오차 범위(2%)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음. 단, 허용오차 범위(2%)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료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 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 중도금은 시행자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 금융기관으로 대출신청(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인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주변 현황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는 신청자 및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을 통해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 ※ 견본주택 84A, 116A, 134타입이 건립되어 있으며, 그 외 미건립 타입(84B, 116B, 216P, 220P 타입)은 견본주택 내 CG 및 사업승인 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를 우선합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분 / 약4	닉표기(타입)	84A	84B	116A	116B	134	합 계
	국가유공자 등	4	2	-	-	-	6
	장기복무 제대군인	4	2	-	-	-	6
기교차서 트변고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4	2	-	-	-	6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4	2	-	-	-	6
	중소기업 근로자	4	2	-	-	-	6
	의사상자	1	2	-	-	-	3
다자녀가구	¹ 특별공급	21	12	8	3	12	56
신혼부부	특별공급	39	23	-	-	-	62
노부모부잉	· 특별공급	6	3	2	1	3	15
생애최초	41	24	-	-	-	65	
이전기관(산업단지)	21	12	8	3	12	56
합	합계			18	7	27	287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특별공급

4

구분			내용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 ※ 2024.03.25. 시행된 「주택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	ያ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 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나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 공급기준	당첨자빌	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이전기관(산업단지) 특별공급 : 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단,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산업단지가 속한 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산업단지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대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m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x27;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4-1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충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충청북도청 노인장애인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충청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의사상자 : 충청북도청 복지정책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구분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 기타지역 거주자(전국)	_	부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메급8 국	동매점	기준	점수	비표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3명 2명	40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5	2명 3명 이상 2명 1명	25 15 10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당첨자 선정방법	세대구성(3)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4)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해당 시·도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					
	거주기간(5)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0 5	- (충청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	※ (1), (2):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	_
4	-3

구분		내용								
대상자	- 신혼부부는 혼인선 ※ 단, 혼인기간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 혼인기간이 7년 (■ 「신혼부부 주택 등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35%)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당첨자 선정방법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지	다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	학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여	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청주시)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지	· 사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	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③지역: 해당지역 거주자(청주시) → 기타지역 거주자(전국)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2.20.(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소득금액						
エコナモ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우선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부부 중 한 명만	100% 초과	7,004,510원~	8,248,468원~	8,775,072원~	9,563,283원~	10,351,494원~	11,139,705원~	
신생아일반공급,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8,405,412원~	9,898,161원~	10,530,086원~	11,475,939원~	12,421,793원~	13,367,646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추첨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정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T =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단, 아래 * 「농지법 * 「농지법 * 「초지법 하가증의 * 공부상 * 종중소역 제한을	경우는 제외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 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 무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	용되고 있는 경우 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①지역 : 해당지역 거 ² ■ ②가점 : 「주택공급에	주자(청주시) → 기타지 관한 규칙」별표1(가 틸 경우 부적격 당첨 7	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			기재 오류에 의한 잘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무주택기간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당첨자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선정방법			7년 이상 ~ 8년 미만	16					
		35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1명	10	5명	30			
	© 10 111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③입주자저축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가입기간	17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 _ , _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2 + 3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
구분	
대상자	
당첨자	
선정방법	

1 12	711 0					
1 2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대상자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단, 본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 가구 중 단독세대인 분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당첨자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선정방법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Тпон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		_ 22 -			

내용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해당지역 거주자(청주시) → 기타지역 거주자(전국)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2.20.(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人드그브	소득구분 비율 -		소득금액					
	그 국 1 군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9,105,863원~	10,723,008원~	11,407,593원~	12,432,268원~	13,456,942원~	14,481,616원~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추첨공급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비고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건축물		- 건축물가 시가표준		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T ==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단, 아래 * 「농지법 * 「초지법 * 「초지법 사업장 * 공부상 * 종중소역 제한을	경우는 제외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마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음 무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	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로서 이전기관(산업단지)에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청약통장 불필요) - 주택의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택특별공급대상 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사업주 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을 허위로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그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주 택특별공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 이전기관(산업단지) - 청주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청주일반산업단지, 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바이오폴리스지구),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창제2산업단지, 오창제3산업단지, 오창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서오창테크노밸리, 옥산산업단지, 내수농공단지, 현도농공단지, 남청주현도일반산업단지, 강내산업단지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추첨 ■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산업단지가 속한 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산업단지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은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세대원 포함)은 특별공급 청약 불가합니다.
비고	■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제4조(특별공급 대상자) ① 사업주체가 산업단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업의 종사자. 다만,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입주기업의 경우에도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이 주택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기 입주한 경우를 포함한다)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이 20인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종사자. 다만, 연구원 보유의 최소 기준은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마. 국립·공립 연구기관

- 바.「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기관
- 아.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
- 3.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기 입주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외국 의료기관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종사자
- 4. 해당 산업단지에 설치하는(기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 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 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산업단지가 속한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산업단지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제4조의2(상시근로자의 범위)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 1. 임원 및「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4.「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별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 시행 2021. 8. 17.

- 1. 한국개발연구원,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통일연구원, 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6. 한국행정연구원,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8. 산업연구원, 9. 에너지경제연구원,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 한국노동연구원, 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15. 한국법제연구원,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8. 한국교통연구원, 19. 한국환경연구원, 20. 한국교육개발원,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2. 국토연구원, 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4. 건축공간연구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별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 시행 2024. 11. 1.

-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삭제 <2024. 1. 26.>,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 13. 삭제 <2011.12.31>,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16. 삭제 <2024. 1. 26.>,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 19. 한국화학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21. 한국재료연구원, 2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의2.「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6. 「원자력안전법」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 8.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 9.「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부설연구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 9. 22, 2022. 8. 9.>
- ②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의료인 2명 이상과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 9. 22.>
-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의2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사업주를 포함하여 1명 이상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6. 9. 22.>
- ④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9. 22., 2017. 7. 26., 2022. 8. 9.>
- ⑤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란「연구산업진흥법」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서 연구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9. 22., 2017. 7. 26., 2021. 10. 19.>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이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6. 9. 22., 2017. 7. 26.>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외국 의료기관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종사자

「의료법」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2020. 3. 4.>
-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 2. 조산워: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 ④ 삭제 <2009. 1. 30.>, ⑤ 삭제 <2009. 1. 30.>, ⑥ 삭제 <2009. 1. 30.>, ⑦ 삭제 <2009. 1. 30.>, ⑧ 삭제 <2009. 1. 30.>

▶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유아교육법」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5

구분		내	<u></u>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준위별 성약통상 사격요건을 만족하는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							
		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낭인 분(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한힘					
		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면석멸 메지금액 이상인 문						
	- 2군위 : 에지금액과 관계값이 정확에		#+!OH 1						
I약통장	구 분	[청약예금의 여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에서듬색]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ŀ격요건	전용면적 85m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		을 말함						
		※ 자국은 업무자보업용보실 전에 무격증업단증자의 무단증목표에 띄는 기무자국을 걸음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다처지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청주시) →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기타지역 거주자(전국)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청주시) →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	기타지역 거주자(전국)	제	추첨제					
당첨자 선정방법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청주시) → ■ ②가점	기타지역 거주자(전국) 라비율 가점	-	추첨제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무주택기간	3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 F	1명	10	5명	30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 01スココス		본인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718712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내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6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이전기관(산업단지)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민영주택)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1.09.(목) ~ 2025.01.18(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제공일시: 2025.01.09.(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 서류 제출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구 분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청약 당첨자 서류 제출	견본주택 방문 접수	당사 견본주택(방문 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5. 01. 10(금) ~ 2025. 01. 18(토), (10:00 ~ 16: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326번지)

※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청약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이며, 미 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 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 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서	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0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여권
	0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서	청약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신청자인 경우 미제출 /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 부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0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필수
		0	청약통장순위확인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
		0	복무확인서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0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0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 불가
		0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청약자 및세대원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세대원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0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청약자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

	서	류유형		발급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청약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확인서(당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0	주택특별공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청약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확인서(당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이전기관 (산업단지) 특별공급 O P 부특별공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첨부서류		8.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에만 해당) 9. 비자 사본(외국인만 해당)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만 해당)				
	0		서약서	-	견본주택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0	한부모가족증명서	청약자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다자녀 가구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특별공급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10171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연락처, 직인날인 원본)	
		0	출산 이행 각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0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서	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7년 이내의 혼인기간 및 혼인여부 확인, "상세" 발급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0		소득증빙서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청약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연락처, 직인날인 원본)
		0	출산 이행 각서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0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0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서-	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0F#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여부 확인	
	0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청약자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19세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0		소득 증빙 서류	이상 세대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W 0 W + L +		0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생애최초 특별공급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청약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연락처, 직인날인 원본)	
		0	출산 이행 각서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위임장	청약자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제3자대리 인신청 시추가서류		0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0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서류유형			발급	
구분 <mark>필수 추가 해당서류 기준</mark> (해당자)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도장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0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부적격 통보를		0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공모들 받은자		0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0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0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특별공급 신청 당일 견본주택 내 접수(현장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고령자, 장애인 등 해당 특별공급 서류를 완비한 공급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대리인 접수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 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③ 해당직장 ④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①,② 세무서
자영업 자	신규사업자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② 세무서 ③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원본, 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견본주택 비치

[※] 군 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서류구분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격입증 서류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원본)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입증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산기준	부동산 소유현황	①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입증서류	부동산 소유자	① 해당 부동산 건물,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② 재산세 납부내역 ③ 해당 보유 부동산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 ※ 토지/주택 공시지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 홈택스 / 시가표준액 : 위택스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정부24 ② 위택스 ③ 해당 사이트

-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대상이 됩니다.
- ※ 보유중인 부동산이 없는 경우 : 세대원(미성년자 포함) 전원 제출
- 1.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 결과 화면 캡처본 출력 후 제출 (단, 공인인증서 지참 후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해당 화면을 구현하여야 인정됨)
-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 재산세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 전국단위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해당 시청, 구청, 군청, 주민센터에서 발급)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서	류유형		발급 기준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여권
	0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공통	0		출입국사실증명서	청약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서류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0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필수
		0	청약통장순위확인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0	복무확인서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0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해외		0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 불가
근무자 (단신부임)		0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청약자 및세대원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세대원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가점제		0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청약자		0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서류	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circ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11.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추가서류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0	출입국사실증명서	직계비속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0	위임장	청약자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제3자대리		0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시추가서류		0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0	도장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0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부적격 통보를		0	네다 조태에 대칭 사면지크	해당 주택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공모들 받은자		0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0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0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_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8

구분	일정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5. 01. 20(월) ~ 2025. 01. 23(목), (10:00 ~ 16:00)	당사 견본주택(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326번지)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1차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예비입주자 추첨 및 계약 일정은 정당계약 이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104-719596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지사

- ※ 위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납부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현금수납 불가)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401동 101호 홍길동 → "4010101홍길동", 401동 1101호 홍길동 → "4011101홍길동")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시 무통장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 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서류	류유형		발급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0		전자수입인지	-	인지세 납부 의무화로 인한 제출(제출 및 납부 방법 별도 안내)		
본인	0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아파트 계약금 및 발코니 확장 계약금 등을 당첨자가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내역증		
계약 시	0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여권(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제출서류	0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에 한함. 단, 본인 계약시에 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용도 : 아파트 계약용)		
	0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상의 날인과 일치하여야 함.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제3자		0	인감증명서	본인	당첨자 본인 발급분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대리인		0	위임장	논인	견본주택 내 비치(당첨자 인감도장 날인)		
계약 시		0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여권(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추가서류		0	도장	네티인	서명 또는 날인		
기타		0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계약에 관련된 서류 일체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정당 당첨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공급 계약을 미체결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계약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공급계약은 취소합니다.(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 확인 후 부적격 문제가 치유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처리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됩니다.
- 계약체결 후 분양금액의 연체, 계약 부정행위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 검색을 의뢰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청약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 당첨은 무효처리함)
-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시공사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에 따릅니다.

참고사항

9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구력조뉴어	구 확한경합 및 한경기군 ("구렉중합에 전한 뉴역] 제23소제48 및 제33소)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다.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기.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라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열쇠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열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요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일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열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9. 주택공급신성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가 주택법 시행정, 제3조제하게 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이에 따른 가격이 1 억원(수군권은 1억점인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이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이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이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대로 부탁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제조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제조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제조조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제조조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제조조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제조조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제조조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제조조각 호에 대표적 제조조관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m²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m²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사업주체 및 관계 기관 인 정할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은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 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 (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분양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대출알선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협약이 미체결되거나, 대출협약 체결의 지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리를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융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 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따라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따라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에서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분양계약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 (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 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 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사업 주체가 대납하기로 하며(단,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되지 않음)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 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사 등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 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월** : 2028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전에 입주 가능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60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 또는 공급대금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 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열린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다함께돌봄센터, 온실카페, 실내골프장, 피트니스센터 등) 등 ※ 401동 지상1층 : 열린도서관, 독서실 등 / 402동 지상1층 : 경로당 / 403동 지하1층 : 관리사무소,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장 등

■ 주차장

- 차로폭 최소 6m, 지하1층 주차장 유효높이는 2.7m, 지하2, 3층 주차장 유효높이는 2.3m로 계획되어 있으며, 실제 시공 시 각종 배선, 배관, 조명시설, 통신시설, 주차관제시설, 제연휀룸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 입주전 및 현장방문 시 반드시 확인하시어 차량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공동주택 관리법」제3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10

■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포함)

약식표기	바그나 하자 고치비	계약금(10%)	중도금 1차(10%)	중도금 2차(10%)	잔금(70%)	비고
(타입)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 시	2025-08-04	2026-02-04	입주 예정일	- UT
84A	8,074,000	807,400	807,400	807,400	5,651,800	
84B	11,120,000	1,112,000	1,112,000	1,112,000	7,784,000	
116A	14,721,000	1,472,100	1,472,100	1,472,100	10,304,700	
116B	11,161,000	1,116,100	1,116,100	1,116,100	7,812,700	
134	15,753,000	1,575,300	1,575,300	1,575,300	11,027,100	
216P	19,848,000	1,984,800	1,984,800	1,984,800	13,893,600	
220P	16,158,000	1,615,800	1,615,800	1,615,800	11,310,600	

※ 발코니 확장 시 제공품목 등 필히 견본주택 방문 후 확인하시어 계약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안내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404-735597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지사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각 회차별 납부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401동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4010101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람.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하여야 합니다.)
- ※ 상기 계좌와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 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인증 등을 위하여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므로 반드시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실내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실내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금액은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 면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 이상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환기 등으로 예방 하여야 합니다.(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업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새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창호는 향후 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 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발코니 천장은 도장마감으로 시공되며, 최상층의 경우 ABS천정으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에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배관이 천장 내 설치될 수 있어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실외기실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일부) 또는 실외기실 공간에 환기시스템(장비) 및 환기시스템 배관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 형태)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선택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노출배관(천장, 벽)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의 형태 및 크기는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전열교환기 설치 여부에 따라 주택형별의 발코니 외부 창호 사이즈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 가구 배치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를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1) 시스템에어컨

(단위: 원, 부가가치세포함)

주택형		구분	옵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공급금액
		프리미엄형 -	선택1-1	3대	거실 + 주방 + 안방	5,500,000
	기본형	프디미엄영	선택1-2	5대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8,600,000
0.4.4 0.4.5	기논영	UV/공기청정형	선택2-1	3대	거실 + 주방 + 안방	7,200,000
84A, 84B		00/5/1668	선택2-2	5대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11,500,000
	옵션형	프리미엄형	선택1	4대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2통합(서재형)]	6,800,000
	(고용량)	UV/공기청정형	선택2	4대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2통합(서재형)]	9,000,000
			선택1	3대	거실 + 주방 + 안방	5,400,000
		프리미엄형	선택2	5대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8,600,000
1164 1160	기본형		선택3	6대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10,200,000
116A, 116B		UV/공기청정형	선택1	3대	거실 + 주방 + 안방	7,100,000
			선택2	5대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11,400,000
			선택3	6대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13,600,000
		프리미엄형	선택1	3대	거실 + 주방 + 안방	5,400,000
			선택2	5대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8,600,000
	기보혀		선택3	6대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10,200,000
124	기단병	기본형 UV/공기청정형	선택1	3대	거실 + 주방 + 안방	7,100,000
134			선택2	5대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11,400,000
			선택3	6대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13,500,000
	옵션형	프리미엄형	선택1	5대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2 + [알파룸+침실1통합(서재형)]	8,600,000
	(고용량)	UV/공기청정형	선택2	5대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2 + [알파룸+침실1통합(서재형)]	11,300,000
2165	기보취	프리미엄형	선택1	6대	거실 + 식당 + 안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11,500,000
216P	기본형	UV/공기청정형	선택2	6대	거실 + 식당 + 안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14,800,000
2200	기보청	프리미엄형	선택1	6대	거실 + 식당 + 안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11,500,000
220P	기본형	UV/공기청정형	선택2	6대	거실 + 식당 + 안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14,800,000

2) 가전 (단위: 원, 부가가치세포함)

주택형	7	·분	옵션	구성내용	공급금액
		LG	선택1	냉장/냉동 4도어 (BC4S1AA1) + 김치냉장고 3도어 (BC3K1AA1)	6,700,000
	냉장고	LG	선택2	냉장1+냉동1+김치1도어 (BC1F2AA / BC1L2AA / BC1K2AA)	5,300,000
	9 9 7	삼성	선택1	냉장/냉동 4도어 (RF60DB9KF2AP) + 김치냉장고 3도어 (RQ33DB74D2AP)	5,200,000
		삼성	선택2	냉장1+냉동1+김치1도어 (RZ34C7805AP/RR40C7805AP/RQ34C7815AP)	4,900,000
	쿡 탑	하츠	선택1	인덕션 전기쿡탑 3구 (하츠 EIC-30NW(B)P211) ※후드자동작동기능적용(갤럭시모델제외)	1,100,000
		LG	선택2	인덕션 3구 (BEI3GQBI)	1,300,000
	광파오븐	LG	선택1	일반형 (MZ385EBT1)	470,000
전타입		삼성	선택2	일반형 (NQ36A6555CK)	470,000
	의류관리	LG	선택1	스타일러_5벌 (SC5MBR53)	1,900,000
		삼성	선택2	에어드레서_5벌 (DF24CB9600ER)	2,300,000
	시기비성기	LG	선택1	14인용 (DIE6PT)	1,200,000
	식기세척기 -	삼성	선택2	14인용 (DW60BG837B00)	900,000
	실형	링 팬	-	거실 고급형 실링팬 (루씨에어 레이더 3)	700,000
	요시법하하표기	공용욕실	-	환기팬(티오람 : 환기+온풍+제습+드라이)	300,000
	욕실복합환풍기 -	부부욕실	-	환기팬(티오람 : 환기+온풍+제습+드라이)	300,000
전타입	전열되	교환기	-	공기청정기능 + 내부순환기능 + UV살균기능 (하츠)	400,000
116A	와인	생장고	-	와인냉장고 116A타입(R-WZ46JKX) ※ 주방특화(홈바+서재형 및 홈바+팬트리형) 시 선택가능	1,200,000
216P, 220P			-	와인냉장고 216P, 220P 타입(CW24R/L)	17,700,000

3) 가구 및 마감재 3-1) 84A, 84B 타입

(단위: 원, 부가가치세포함)

		구분			품목	공급금액	
					경구	84A	84B
	중문		84A,	선택1	3연동 슬라이딩 도어(수동)	1,650,000	1,650,000
			84B	선택2	3연동 슬라이딩 도어(자동)	3,200,000	3,200,000
현관	안면인식 출	들입 시스템	84A, 84B	-	안면 인식 도어 카메라, 13인치 통합 월패드, 풀컬러 생활정보기	700,000	700,000
	현곤	<u>·</u> 장	84A, 84B	-	신발장(하부조명특화) + 은경창고도어 + 고급형 수납특화선반	1,200,000	1,200,000
	비데일체형	공용욕실	84A,	-	비데일체형 양변기(아메리칸스탠다드:PLAT NATURAL)	900,000	900,000
	양변기	부부욕실	84B	-	비데일체형 양변기(아메리칸스탠다드:PLAT NATURAL)	800,000	800,000
욕실	욕실 StyleUp	공용욕실	84A,	-	벽타일(포세린타일 600*1200) + 바닥타일(포세린타일600*600) + 세면 대 및 수전(아메리칸 스탠다드) + 욕실악세사리(니켈고급형) +젠다이(칸 스톤) + 간접조명천장 + 욕조 측면 타일마감	4,800,000	4,800,000
		부부욕실	84B	-	벽타일(포세린타일 600*1200) + 바닥타일(포세린타일600*600) + 세면 대 및 수전(아메리칸 스탠다드) + 욕실악세사리(니켈고급형) + 샤워부 스(니켈고급형) + 간접조명천장	5,000,000	5,000,000
		선택1 84A,		선택1	아트월 세라믹타일(확장기본형시)	3,800,000	3,800,000
	아트월	· 특화	84B	선택2	아트월 세라믹타일 + 안방무문선도어(1개소) + 픽처레일 거실 양벽 간 접조명등	7,300,000	7,700,000
				선택1	스톤보드(거실/복도/현관벽/외창주변)	1,700,000	
거실/복도		확장기본형시		선택2	스톤보드(거실/복도/현관벽/외창주변) + 무문선도어(4개소) + 커튼월 조 명특화	5,700,000	
	벽마감 특화	주방옵션시	84A	선택3	스톤보드(거실/복도/현관벽/외창주변) + 무문선도어(3개소) + 커튼월 조 명특화	4,300,000	
		서재형옵션시		선택4	스톤보드(거실/복도/현관벽/외창주변) + 무문선도어(3개소) + 커튼월 조 명특화	4,800,000	
		주방+서재형 옵션시		선택5	스톤보드(거실/복도/현관벽/외창주변) + 무문선도어(2개소) + 커튼월 조 명특화	3,400,000	

				선택1	스톤보드(거실/복도/현관벽/외창주변)		2,770,000
		확장기본형시		선택2	스톤보드(거실/복도/현관벽/외창주변) + 무문선도어(3개소) + 커튼월 조 명특화		6,100,000
		주방옵션시		선택3	스톤보드(거실/복도/현관벽/외창주변) + 무문선도어(3개소) + 커튼월 조 명특화		4,700,000
		아트월옵션시	84B	선택4	스톤보드(거실/복도/현관벽/외창주변) + 무문선도어(3개소) + 커튼월 조 명특화		5,100,000
		서재형옵션시		선택5	스톤보드(거실/복도/현관벽/외창주변) + 무문선도어(2개소) + 커튼월 조 명특화		5,200,000
		아트월+서재 형 옵션시	1	선택6	스톤보드(거실/복도/현관벽/외창주변) + 무문선도어(2개소) + 커튼월 조 명특화		4,100,000
	냉장고장		84A, 84B	선택1	냉장고장(3컬럼 냉장,냉동,김치냉장고 선택 시) + 수납톨장	1,500,000	1,500,000
				선택2	냉장고장(냉장/냉동 4도어 + 김치3도어 선택 시) + 수납톨장	1,500,000	1,500,000
	주방 마감특화	주방벽/상판	84A, 84B	선택1	세라믹 (주방벽/상판) (※ 주방 Style Up 선택 시 선택불가)	7,600,000	3,500,000
				선택2	칸스톤 (주방벽/상판) (※ 주방 Style Up 선택 시 선택불가)	7,900,000	5,400,000
주방			044	선택1	세라믹타일(주방벽/상판) + 고급상부장 유리도어 + 상부장 LED조명 + 고급형 후드 +와이드 아일랜드 + 유리장식장 톨장 + 고급형 주방수전 (아메리칸스탠다드) + 식탁마그네틱 라인등 + 주방슬림라인등	13,700,000	
	주방	와이드	84A	선택2	칸스톤(주방벽/상판) + 고급상부장유리도어 + 상부장 LED조명 + 고급 형후드 + 와이드 아일랜드 + 유리장식톨장 + 고급형주방수전(아메리칸 스탠다드) + 식탁마그네틱 라인등 + 주방슬림라인등	14,000,000	
	StyleUp			선택1	세라믹타일(주방벽/상판) + 고급상부장 유리도어 + 상부장 LED조명 + 고급형 후드 +아일랜드장+ 유리장식장 톨장 + 고급형 주방수전(아메리 칸스탠다드) + 식탁마그네틱 라인등 + 주방슬림라인등		12,600,000
				선택2	칸스톤(주방벽/상판) + 고급상부장유리도어 + 상부장 LED조명 + 고급 형후드 +아일랜드장+ 유리장식톨장 + 고급형주방수전(아메리칸스탠다 드) + 식탁마그네틱 라인등 + 주방슬림라인등		10,900,000

					선택1	세라믹타일(주방벽/상판) + 고급상부장(유리도어) + 상부장LED조명 + 고급형후드 + 아일랜드연장 + 팬트리도어 + 팬트리수납선반 + 장식상 부장 + 고급형 주방수전(아메리칸 스탠다드) + 식탁마그네틱 라인등 +	9,200,000	
		팬트리 강화	84A		구당 + 고급당 구당구선(아메디션 드렌디트) + 역락마그대릭 다천당 + 주방슬림라인등			
				선택2	칸스톤(주방벽/상판) + 고급상부장유리도어 + 상부장LED조명 + 고급형후드 + 아일랜드연장 + 팬트리도어 + 팬트리수납선반 + 장식상부장+고급형 주방수전(아메리칸 스탠다드) + 식탁마그네틱 라인등 + 주방슬림라인등	12,200,000		
				선택1	슬라이딩 붙박이장 (일반형 파우더장 시공됨) (※ 선택2,3과 중복선택 가능하나, 일반형 파우더장이 미시공됨)	3,400,000		
21.11	마스터룸 특화		84A	선택2	고급형 파우더장(칸스톤)	2,000,000		
안방				선택3	슬라이딩 도어 + 통합형 월판넬 조명형 드레스룸(소형 조명형 파우더 장)+드레스룸 특화조명	5,500,000		
			84B	-	슬라이딩 도어 + 통합형 월판넬 조명형 드레스룸 + 고급 조명형 파우 더장+드레스룸 특화조명		6,700,000	
침실1,2	서재형 침실 특화		84A, 84B	선택1	복도팬트리선반 + 복도팬트리도어 + 슬라이딩도어 + 슬라이딩 붙박이 장 +서재 특화조명	4,400,000	4,400,000	
□ □ 1 ,∠	붙박이정	당 특화	84A, 84B	선택2	매립형 붙박이장	12,200,000 3,400,000 2,000,000 5,500,000	2,200,000	
다용도실	세탁신	선반	84A, 84B	-	고급형 세탁선반	150,000	150,000	
	바닥대	가감	84A, 84B	-	600X600 포세린타일 (복도/거실/주방바닥)	2,700,000	2,700,000	
전실		확장기본형	84A, 84B	선택1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색온도조절, 디밍)	2,800,000	2,900,000	
	조명특화	서재형 특화 평면 선택시	84A, 84B	선택2	거실 + 안방 + 침실2 (색온도조절, 디밍)	2,800,000	2,900,000	

3-2) 116A, 116B 타입 (단위: 원, 부가가치세포함)

	구분				품목	공급금액	
		T 世			古古	116A	116B
	~ .	116A,	선택1	3연동 슬라이딩 도어(수동)	1,650,000	1,650,000	
	중님	-	116B	선택2	3연동 슬라이딩 도어(자동)	3,200,000	3,200,000
현관	안면인식 출입 시스템		116A, 116B	-	안면 인식 도어 카메라, 13인치 통합 월패드, 컬러생활정보기	700,000	700,000
	현관장		116A, 116B	-	신발장(하부조명, 조명선반 특화) + 브론즈경 창고도어 + 고급형 수납특화 선반	1,900,000	1,900,000
	비데일체형	공용욕실	116A, 116B	-	비데일체형 양변기(아메리칸스탠다드:PLAT NATURAL)	900,000	900,000
	양변기	부부욕실	116A, 116B	-	비데일체형 양변기(아메리칸스탠다드:PLAT NATURAL)	800,000	800,000
욕실	욕실가구특화 부부욕실		116A, 116B	-	조명형 거울 + 세면대 하부장	700,000	700,000
, =	욕실	공용욕실	116A, 116B	-	벽타일(포세린타일 600*1200) + 바닥타일(포세린타일600*600) + 젠다이 (칸스톤)+ 세면대 및 수전(아메리칸 스탠다드)+ 욕실악세사리(니켈고급형) + 간접조명천장+ 샤워부스(니켈고급형)	5,100,000	5,100,000
	StyleUp	부부욕실	116A, 116B	-	벽타일(포세린타일 600*1200) + 바닥타일(포세린타일600*600) + 세면대 및 수전(아메리칸 스탠다드)+ 욕실악세사리(니켈고급형) + 간접조명천장 + 욕조 측면 타일마감	5,700,000	5,900,000
			1164	선택1	아트월 세라믹타일(확장기본형시)	4,300,000	4,300,000
	아트월	특화	116A, 116B	선택2	아트월 세라믹타일 + 안방무문선도어(1개) + 픽처레일 거실 양벽 간접조 명등	7,800,000	7,800,000
기시/보드				선택1	스톤보드(거실/복도/현관벽/외창주변)	2,300,000	
거실/복도	벽마감 특화	확장기본형시 1	116A	선택2	스톤보드(거실/복도/현관벽/외창주변) + 무문선도어(4개) + 커튼월 조명특화	5,900,000	
	<u></u>	주방옵션시		선택3	스톤보드(거실/복도/현관벽/외창주변) + 무문선도어(3개) + 커튼월 조명특화	4,000,000	

	1		Г													
				선택1	스톤보드(거실/복도/현관벽/외창주변)		3,600,000									
		확장기본형시		선택2	스톤보드(거실/복도/현관벽/외창주변) + 무문선도어(4개소) + 커튼월 조명 특화		7,300,000									
		주방옵션시	116B	선택3	스톤보드(거실/복도/현관벽/외창주변) + 무문선도어(4개소) + 커튼월 조명 특화		6,700,000									
		아트월 옵션시		선택4	스톤보드(거실/복도/현관벽/외창주변) + 무문선도어(3개) + 커튼월 조명특 화		5,800,000									
		아트월+주방 옵션시		선택5	스톤보드(거실/복도/현관벽/외창주변) + 무문선도어(3개) + 커튼월 조명특 화		6,000,000									
	1 11 7 1-	¬ xı	116A,	선택1	냉장고장(3컬럼 냉장,냉동,김치냉장고 선택 시) + 수납톨장	1,500,000	1,900,000									
	- 명성 -	냉장고장	116B	선택2	냉장고장(냉장/냉동 4도어 + 김치3도어 선택 시) + 수납톨장	1,500,000	1,900,000									
	주방 마감특화 주	주방벽/상판	주방벽/상판 116A, 116B	선택1	세라믹 (주방벽/상판) (※ 주방 Style Up 선택 시 선택불가)	8,500,000	6,300,000									
				선택2	칸스톤 (주방벽/상판) (※ 주방 Style Up 선택 시 선택불가)	7,600,000	5,700,000									
주방	주방 주방 StyleUp	홈바+서재 방	홈바+서재	홈바+서재	홈바+서재	홈바+서재	홈바+서재	홈바+서재	홈바+서재	홈바+서재	홈바+서재	116A	선택1	세라믹타일(주방벽/상판) + 서재2 슬라이딩도어 + 고급상부장+상부장LED 조명 + 유리장식톨장 + 홈바 + 고급형후드 + 고급주방수전(아메리칸스탠 다드) +식탁마그네틱 라인등 + 주방슬림라인등+서재 특화조명	12,500,000	
				선택2	칸스톤(주방벽/상판) + 서재2 슬라이딩도어 + 고급상부장+상부장LED조명 + 유리장식톨장 + 홈바 + 고급형후드 + 고급주방수전(아메리칸스탠다드) +식탁마그네틱 라인등 + 주방슬림라인등+서재 특화조명	14,100,000										
		홈바+팬트리		선택1	세라믹타일(주방벽/상판)+패밀리형아일랜드+팬트리도어+팬트리수납선반+ 고급상부장+상부장LED조명+유리장식톨장+홈바+고급형후드+고급주방수전 (아메리칸스탠다드)+식탁마그네틱 라인등 + 주방슬림라인등	15,300,000										
			홈바+팬트리	홈바+팬트리	홈바+팬트리	홈바+팬트리	116A -	선택2	칸스톤(주방벽/상판)+패밀리형아일랜드+팬트리도어+팬트리수납선반+고급 상부장+상부장LED조명+유리장식톨장+홈바+고급형후드+고급주방수전(아 메리칸스탠다드)+식탁마그네틱 라인등 + 주방슬림라인등	14,400,000						

	와이드		116B	선택1	세라믹타일(주방벽/상판) + 고급상부장+상부장LED조명 + 와이드아일랜드 + 고급형후드 + 고급주방수전(아메리칸스탠다드) + 식탁마그네틱 라인등 + 주방슬림라인등		7,100,000
		아일랜드	1105	선택2	칸스톤(주방벽/상판) + 고급상부장+상부장LED조명 + 와이드아일랜드 + 고급형후드 + 고급주방수전(아메리칸스탠다드) + 식탁마그네틱 라인등 + 주방슬림라인등		6,400,000
	주방 팬트	트리특화	116B	선택1	고급형 수납특화선반		900,000
			116A, 116B	선택1	슬라이딩 붙박이장 (일반형파우더장 시공됨)	3,500,000	3,500,000
안방	마스터	룸 특화	116A, 116B	선택2	고급형 파우더장(칸스톤/조명)+화장대 후면 및 상판(칸스톤) + 유리수납장 (조명)+월판넬 드레스룸(조명)+드레스룸 도어+드레스룸 특화조명	11,900,000	11,400,000
			116A	선택3	슬라이딩 도어 + 파우더장 통합형 월판넬 드레스룸(조명)+드레스룸 특화 조명	6,300,000	
	침실1,2	붙박이장 특화	116A	-	매립형 불박이장	2,400,000	
침실1,2	침실1	붙박이장 특화	116B	-	붙박이장 (선택 시 침실2 사이즈 줄어듦)		1,300,000
	침실2	드레스룸 특화	116B	-	드레스룸 도어 + 월판넬 드레스룸(조명)+드레스룸 특화조명		4,900,000
다용도실	세탁	선반	116A, 116B	-	고급형 세탁선반	200,000	200,000
전실	바닥	마감	116A, 116B	-	600X600 포세린타일 (복도/거실/주방바닥)	3,300,000	3,300,000
건글 	조명특화	확장기본형	116A, 116B	-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색온도조절, 디밍)	3,000,000	3,100,000

3-3) 134 타입 (단위: 원, 부가가치세포함)

	구분			품목	공급금액
		TE			134
		전 ¹		3연동 슬라이딩 도어(수동)	1,650,000
	중문		선택2	3연동 슬라이딩 도어(자동)	3,200,000
현관	안면인	식 출입 시스템	-	안면 인식 도어 카메라, 13인치 통합 월패드, 컬러생활정보기	700,000
		현관장	-	신발장(하부조명, 조명선반 특화) + 브론즈경 창고도어 + 고급형 수납특화선반	2,600,000
	복도	프트리 특화	-	고급형 수납특화선반	2,300,000
	공용욕실 비데일체형		-	비데일체형 양변기(아메리칸스탠다드:PLAT NATURAL)	900,000
	양변기	부부욕실	-	비데일체형 양변기(아메리칸스탠다드:PLAT NATURAL)	800,000
	욕실가구특화 ·	공용욕실 -		조명형 거울 + 세면대하부장	
욕실		부부욕실	-	조명형 거울 + 세면대하부장	900,000
	OAL	공용욕실	-	벽타일(포세린타일 600*1200) + 바닥타일(포세린타일600*600) + 세면대 및 수전(아메리칸 스탠다드)+ 욕실악세사리(니켈고급형)+간접조명천장 + 샤워부스(니켈고급형)	5,900,000
	욕실 StyleUp	부부욕실	-	벽타일(포세린타일 600*1200) + 바닥타일(포세린타일600*600) +세면대 및 수전(아메리칸 스탠다드)+ 욕실악세사리(니켈고급형) + 샤워부스(니켈고급형) + 간접조명천장 + 욕조 측 면 타일마감	7,200,000
	0	L드의 트칭	선택1	아트월 세라믹타일(확장기본형시)	4,300,000
		아트월 특화		아트월 세라믹 + 안방 무문선도어(1개소) + 픽처레일 거실 양벽 간접조명등	11,500,000
		확장기본형시(복도팬트	선택1	스톤보드(거실/복도/현관벽/외창주변)	2,900,000
거실/복도	벽마감	리옵션시 포함)	선택2	스톤보드(거실/복도/현관벽/외창주변) + 무문선도어(3개) + 커튼월 조명특화	5,600,000
	특화	주방옵션시	선택3	스톤보드(거실/복도/현관벽/외창주변) + 무문선도어(3개) + 커튼월 조명특화	3,800,000
		서재형 옵션시	선택4	스톤보드(거실/복도/현관벽/외창주변) + 무문선도어(2개) + 커튼월 조명특화	4,800,000

	ı		1		
	냉장고장		선택1	냉장고장(3컬럼 냉장,냉동,김치냉장고 선택 시) + 수납톨장	1,700,000
	00=0		선택2	냉장고장(냉장/냉동 4도어 + 김치3도어 선택 시) + 수납톨장	
	조바 미가트칭	ᄌᄔᄖᄱᄭᆔᇳ	선택1	세라믹 (주방벽/상판) (※ 주방 Style Up 선택 시 선택불가)	9,500,000
	주방 마감특화	주방벽/상판	선택2	칸스톤 (주방벽/상판) (※ 주방 Style Up 선택 시 선택불가)	9,000,000
			선택1	세라믹타일(주방벽/상판) + 와이드아일랜드 + 홈바 + 고급상부플랩장 + 상부장LED조명 + 고급형후드 + 고급주방수전(아메리칸스탠다드) + 아트월 유리장식장 + 식탁마그네틱 라인 등 + 주방슬림라인등	15,500,00
주방	주방	와이드 아일랜드	선택2	칸스톤(주방벽/상판) + 와이드아일랜드 + 홈바 + 고급상부플랩장 + 상부장LED조명 + 고급형후드 + 고급주방수전(아메리칸스탠다드) + 아트월 유리장식장 + 식탁마그네틱 라인등 + 주방슬림라인등	14,400,00
	StyleUp		선택1	세라믹타일(주방벽/상판) + 히든주방 + 패밀리형아일랜드 + 슬라이딩도어 + 홈바 + 고급 상부플랩장 + 상부장LED조명 + 고급형후드 + 고급주방수전(아메리칸스탠다드) + 아트월 유리장식장 + 식탁마그네틱 라인등 + 주방슬림라인등	14,500,00
		히든주방	선택2	칸스톤(주방벽/상판) + 히든주방 + 패밀리형아일랜드 + 슬라이딩도어 + 홈바 + 고급상부 플랩장 + 상부장LED조명 + 고급형후드 + 고급주방수전(아메리칸스탠다드) + 아트월 유 리장식장 + 식탁마그네틱 라인등 + 주방슬림라인등	11,500,00
주방 팬트리특화		· 팬트리특화	-	고급형 수납특화선반	1,100,00
안방	마스터룸 특화		선택1	월판넬 고급 오픈 드레스룸 +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 + 고급형파우더장(조명)+화장대 후면 및 상판(칸스톤) +월판넬드레스룸(조명)+고급드레스룸도어+드레스룸특화조명	12,300,00
			선택2	수납 벤치형 오픈서재 + 파티션	5,200,00
침실1,2,	알파룸+침실1	서재특화형	-	2 슬라이딩도어 + 월판넬 드레스룸 + 드레스룸도어+드레스룸 특화조명+서재 특화조명	5,300,00
알파룸	침실2	붙박이장 특화	-	붙박이장	
다용도실		세탁선반	-	고급형 세탁선반	200,000
		바닥마감	-	600X600 포세린타일 (복도/거실/주방바닥)	4,300,00
전실	조명특화	확장기본형 (서재특화형 포함)	-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색온도조절, 디밍)	3,100,00

3-4) 216P 타입 (단위: 원, 부가가치세포함)

구분			π.ρ.	공급금액	
		丁 世		품목	216P
		중문		1 슬라이딩 도어(수동)	1,650,000
	ਠੋਦ		선택2	1 슬라이딩 도어(자동)	3,200,000
현관	안면인	<u>l</u> 식 출입 시스템	-	안면 인식 도어 카메라, 13인치 통합 월패드, 컬러생활정보기	700,000
		현관장	-	신발장(하부조명, 조명선반 특화) + 브론즈경 창고도어 + 고급형 수납특화선반	2,900,000
	비데일체형	공용욕실	-	비데일체형 양변기(아메리칸스탠다드:PLAT NATURAL)	900,000
	양변기	부부욕실	-	비데일체형 양변기(아메리칸스탠다드:PLAT NATURAL)	800,000
	욕실가구특화	공용욕실	-	조명형 거울 + 세면대하부장	800,000
욕실	국글기구국회 	부부욕실	-	조명형 거울 + 세면대하부장	900,000
	욕실 StyleUp	공용욕실 -		벽타일(포세린타일 600*1200) + 바닥타일(포세린타일600*600) + 세면대 및 수전(아메리칸 스탠다드)+ 욕실악세사리(니켈고급형)+ 간접조명천장 + 샤워부스(니켈고급형)	7,400,000
		부부욕실	-	벽타일(포세린타일 600*1200) + 바닥타일(포세린타일600*600) +세면대 및 수전(아메리칸스탠다드) + 욕실악세사리(니켈고급형) +샤워부스(니켈고급형) + 간접조명천장 + 고급형욕조(측면 타일마감)	14,600,000
			선택1	아트월 세라믹타일(확장기본형시)	11,600,000
		아트월 특화	선택2	아트월 세라믹타일 + 픽처레일 거실 양벽 간접조명등	12,200,000
거실/복도		하자기보험시	선택1	스톤보드(거실/복도/현관벽/외창주변)	5,400,000
	벽마감 특화	확장기본형시	선택2	스톤보드(거실/복도/현관벽/외창주변) + 무문선도어(4개) + 커튼월 조명특화	8,900,000
		아트월옵션시	선택3	스톤보드(거실/복도/현관벽/외창주변) + 무문선도어(4개) + 커튼월 조명특화	9,400,000
		선택1 선택2		냉장고장 변경(3컬럼 냉장,냉동,김치냉장고 선택 시) + 수납톨장	1,700,000
				냉장고장 변경(냉장/냉동 4도어 + 김치3도어 선택 시) + 수납톨장	1,700,000
주방		냉장고장	선택3	냉장고장 변경(3컬럼 냉장,냉동,김치냉장고 선택 시) + 빌트인 와인냉장고장 + 수납톨장	1,700,000
			선택4	냉장고장 변경(냉장/냉동 4도어 + 김치3도어 선택 시) + 빌트인 와인냉장고장 + 수납톨장	1,700,000

	주방 마감특화	주방 마감특화 주방벽/상판	선택1	세라믹 (주방벽/상판) (※ 주방 Style Up 선택 시 선택불가)	8,800,000
			선택2	칸스톤 (주방벽/상판) (※ 주방 Style Up 선택 시 선택불가)	7,100,000
	주방 이제도	선택1	세라믹타일(주방벽/상판) + 아일랜드 + 고급상부플랩장 + 상부장LED조명 + 하이엔드급 후드 + 고급주방수전(아메리칸스탠다드) + 식탁마그네틱 라인등 + 주방슬림라인등	7,800,000	
	StyleUp		선택2	칸스톤(주방벽/상판) + 아일랜드 + 고급상부플랩장 + 상부장LED조명 + 하이엔드급 후드 + 고급주방수전(아메리칸스탠다드) + 식탁마그네틱 라인등 + 주방슬림라인등	6,100,000
안방	마스터룸 특화		-	월판넬 고급 오픈 드레스룸 +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 + 고급형파우더장(조명) + 고급 드 레스룸 도어 +드레스룸 특화조명	16,300,000
	침실2	붙박이장 특화	-	붙박이장	2,800,000
침실2,3,4	침실3	붙박이장 특화	-	붙박이장	1,300,000
	침실4	붙박이장 특화	-	붙박이장	1,700,000
다용도실		세탁선반	-	고급형 세탁선반	200,000
 전실	바닥마감		-	600X600 포세린타일 (복도/거실/주방바닥)	6,900,000
	조명특화	확장기본형	-	거실 + 안방 + 침실2 + 침실3 + 침실4 (색온도조절, 디밍)	3,900,000

3-5) 220P 타입 (단위: 원, 부가가치세포함)

	구분			품목			
	,	T世		古令	220P		
	* D		선택1	1 슬라이딩 도어(수동)	1,650,000		
취기		중문 -		1 슬라이딩 도어(자동)	3,200,000		
현관	안면인	식 출입 시스템	-	안면 인식 도어 카메라, 13인치 통합 월패드, 컬러생활정보기	700,000		
	현관장		-	신발장(하부조명, 조명선반 특화) + 브론즈경 창고도어 + 고급형 수납특화선반	3,200,000		
	비데일체형 양변기	공용욕실 - 체형		비데일체형 양변기(아메리칸스탠다드:PLAT NATURAL)			
		부부욕실		비데일체형 양변기(아메리칸스탠다드:PLAT NATURAL)			
	욕실가구특화	공용욕실 -		조명형 거울 + 세면대하부장	800,000		
욕실		부부욕실	-	조명형 거울 + 세면대하부장	900,000		
	0.11	공용욕실 - 스탠다드)+ 욕실악세사리(니켈고급형)+ 간접조명천장 + 샤워부스(니켈고급형)		벽타일(포세린타일 600*1200) + 바닥타일(포세린타일600*600) +세면대 및 수전(아메리칸 스탠다드)+ 욕실악세사리(니켈고급형)+ 간접조명천장 + 샤워부스(니켈고급형)	6,100,000		
	욕실 StyleUp	부부욕실	-	벽타일(포세린타일 600*1200) + 바닥타일(포세린타일600*600) + 세면대 및 수전(아메리칸 스탠다드)+ 욕실악세사리(니켈고급형) + 샤워부스(니켈고급형) + 간접조명천장 + 고급형 욕조(측면 타일마감)	13,800,000		
	0.50.54		0150154		선택1	아트월 세라믹타일(확장기본형시)	
		아트월 특화		아트월 세라믹타일 + 픽처레일 거실 양벽 간접조명등	10,100,000		
거실/복도		확장기본형시	-	스톤보드(거실/복도/현관벽/외창주변)	6,200,000		
	벽마감 특화	확장기본형시, 아트월옵션시	-	스톤보드(거실/복도/현관벽/외창주변) + 무문선도어(4개) + 커튼월 조명특화	9,700,000		

			선택1	냉장고장 변경(3컬럼 냉장,냉동,김치냉장고 선택 시) + 수납톨장	1,700,000
			선택2	냉장고장 변경(냉장/냉동 4도어 + 김치3도어 선택 시) + 수납톨장	1,700,000
		냉장고장	선택3	냉장고장 변경(3컬럼 냉장,냉동,김치냉장고 선택 시) + 빌트인 와인냉장고장 + 수납톨장	1,700,000
			선택4	냉장고장 변경(냉장/냉동 4도어 + 김치3도어 선택 시) + 빌트인 와인냉장고장 + 수납톨 장	1,700,000
주방	조바 마가트히	즈바벼 /사파	선택1	세라믹 (주방벽/상판) (※ 주방 Style Up 선택 시 선택불가)	8,000,000
	주방 마감특화 주방벽/상핀		선택2	칸스톤 (주방벽/상판) (※ 주방 Style Up 선택 시 선택불가)	8,900,000
	주방	페미기청 이이레드	선택1	세라믹타일(주방벽/상판) + 아일랜드 + 고급상부플랩장 + 상부장LED조명 + 하이엔드급 후드 + 고급주방수전(아메리칸스탠다드) +식탁마그네틱 라인등 + 주방슬림라인등	7,100,000
:	StyleUp	패밀리형 아일랜드	선택2	칸스톤(주방벽/상판) + 아일랜드 + 고급상부플랩장 + 상부장LED조명 + 하이엔드급 후 + 고급주방수전(아메리칸스탠다드) +식탁마그네틱 라인등 + 주방슬림라인등	
	주방 팬트리특화		-	고급형 수납특화선반	1,100,000
안방	마	스터룸 특화	-	월판넬 고급 오픈 드레스룸 +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 + 고급형파우더장(조명) + 고급 드레스룸 도어 +드레스룸 특화조명	17,000,000
	침실1	붙박이장 특화	-	붙박이장	2,800,000
침실1,2,3	침실2	붙박이장 특화	-	붙박이장	1,300,000
	침실3	붙박이장 특화	-	붙박이장	1,700,000
다용도실		세탁선반	-	고급형 세탁선반	200,000
저시		바닥마감	-	600X600 포세린타일 (복도/거실/주방바닥)	6,900,000
전실	조명특화	조명특화 확장기본형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색온도조절, 디밍)	4,100,000

■ 추가 선택품목 공사비 납부방법

구분	계약금(10%)	중도금 1차(10%)	중도금 2차(10%)	잔금(70%)
TE	계약 시	2025-08-04	2026-02-04	입주 예정일
추가 선택품목 납부방법 (시스템에어컨, 가전, 가구 및 마감재)	선택한 추가 선택품목 총 금액의 10%	선택한 추가 선택품목 총 금액의 10%	선택한 추가 선택품목 총 금액의 10%	선택한 추가 선택품목 총 금액의 70%

-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 내용과 본 공고가 상이할 경우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를 우선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사비 납부계좌 안내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공사비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904-728933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지사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각 회차별 납부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401동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4010101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람.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하여야 합니다.)
- ※ 상기 계좌와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 ※ 선택품목 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 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아파트 분양금액과는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부가세포함)은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세대의 설계 특성에 따라 상이하니 공고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와 관련된 소요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해제, 변경 시 원상회복,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도품목 계약이 가능한 기간, 중도금 납입 또는 자재 발주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미확장 시 시공상의 문제로 선택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필히 확인하시어 계약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은 타입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추가 선택품목을 보여드리기 위해 타입별로 상이한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선택하는 제품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고,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어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타입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조명기구, 가구(시스템 가구 포함)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 구성,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시점 모델 확정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적용,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일정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해당 공사의 착수 이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단, 추가 선택품목 계약체결 및 납부일정 등은 별도 통보 예정)
- 세대 내 설치되는 가전류는 본공사 시 사용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열림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4-1) 시스템 에어컨 등 유의사항

- 시스템 에어컨은 상기 옵션 내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부분적인 선택 불가)
- 시스템 에어컨 등 선택옵션은 시공 상의 문제로 추가계약 등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 품목으로 선택 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 및 침실(1, 2)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4개소 냉매배관 설치 됩니다.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냉매배관은 천장 속 노출배관으로 설치 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 될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옵션은 거실스탠드, 안방 벽걸이 에어컨 설치용 냉매배관 및 콘센트(안방 벽걸이용 에어컨)을 미시공하는 조건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설치는 권장하지 않으며, 개별설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 설치 위치는 실외기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컨트롤러(리모컨)는 무선이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성능은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임의로 변경 또는 제외할 수 없습니다.

4-2) 가전 등 유의사항

- 마감사양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 시 제조사의 사정으로 단종될 경우 대체 모델이 설치됩니다.
- 가전제품 품목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됩니다.
- 냉장고+김치냉장고 옵션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식기세척기 선택 시 제품 전면부에 주방 가구마감과 동일한 색상의 판넬이 부착됩니다.(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일반 주방 하부장의 수납장으로 시공됨)
-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 설치 전 공급을 위한 매립호스가 설치되며 이에 대한 시공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식기세척기 옵션 미 선택시 매립호스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하츠 인덕션 선택 시에만 자동 후드 연동 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 빌트인 냉장고 마감사양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시 제조사의 사정으로 단종될 경우 대체 모델이 설치됩니다.
- 가전제품은 상기 표기된 바와 같이 주택형별로 맞춤 구성된 세트로만 판매하고 있으므로 상품의 조합 및 설치위치, 모델, 디자인, 색상은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개별선택 및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선택 시 주택형에 따라, 가전 배치 순서 및 가전, 가구의 열림 방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의 도어색상은 계약자가 임의로 개별선택 및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선택에 따라 주방가구의 형태 및 크기, 수납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품목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해당세트 구성 제품별 설치위치 포함)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미러세대타입)
- 빌트인 냉장고 문 열림 방향은 동일 주택형 일지라도 평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선택 및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전기오븐은 전자레인지와 오븐 겸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전기오븐 옵션 미선택 시 일반 주방하부장의 수납장으로 시공됩니다.
- 인덕션 미선택 시 가스쿡탑(3구)이 설치됩니다.
- 인덕션 선택 시에도 가스배관 및 차단기가 설치됩니다.
- 가전제품 품목은 주택형별의 구조 및 평면 여건에 따라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 가전을 옵션 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품 성능 개선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전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단종, 변경, 성능향상 등 제조사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3) 인테리어 등 유의사항

- 본 공사 시 각종 가구 및 도어의 손잡이, 하드웨어, 레일, 액세서리 등의 디테일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시스템선반의 사이즈, 형태, 재질, 설치방식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납성 개선 및 시공상의 이유로 가구의 크기 및 구성, 하드웨어 사양, 마감 재질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옵션 선택에 따라 천장몰딩, 걸레받이의 설치여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레이아웃에 따라 가구의 길이, 구성, 디자인, 위치는 상이할 수 있으며, 각 타입별 추가 선택품목 관련 항목을 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별로 가구의 구성과 위치가 상이하므로 계약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입별 옵션형에 따라 화장대의 크기 및 구성이 상이하므로 계약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터룸 특화 선택 시, 화장대 위치가 옵션에 따라 다르게 조정되어 설치됩니다.
- 서재특화형, 불박이장 특화 선택 시, 제공되는 불박이장의 설치 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바닥과 벽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서재특화형, 붙박이장 특화 미 선택 시 도배지로 마감 됩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본공사 시공 여건에 따라 디테일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상부 선반을 탈착할 경우 선반 하부에 조명이 설치된 부분은 손상될 수 있으며, 손상 시 재설치는 불가합니다.
- 벽판넬형 시스템가구에 과다한 중량물 적재 시 파손 및 판넬 탈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시스템가구는 의류보관용으로 과다한 적재물 적치 시 파손 및 판넬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상판(세라믹타일, 칸스톤 등) 의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 시 연결부위 발생(세대별 상이할 수 있음) 및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재의 특성상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슬라이딩 도어 특성상 개폐 시 벽체에서 돌출될 수 있으며, 벽과의 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돌출 사이즈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슬라이딩 도어는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유리는 강화유리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 슬라이딩 도어 바닥 레일 마감판은 본공사 시공 시 한 판으로 제작되어 시공됩니다.
- 슬라이딩 도어는 특성상 한측 도어는 고정되어 시공됩니다.
- 타입별 옵션선택에 따라 콘센트, 스위치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특성상 무늬, 색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특성상 코너부에는 코너비드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주택형별의 구조 및 현관크기에 따라 중문의 개폐타입 및 사이즈, 색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평면도 등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은 동급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개폐방향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벽과 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의 유리는 강화유리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선택 시 주택형에 따라 디딤판의 크기, 디자인, 위치는 미선택 시와 상이할 수 있으며, 현관 디딤판과 바닥마감 사이 재료분리대가 설치됩니다.
- 현관중문 선택 시 주택형에 따라 신발장 옆 가구 마감의 크기 및 위치는 미선택 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시공상 중문틀 또는 벽패널과 다소 이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외풍 유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선택 시, 마감 형태가 일부 조정될 수 있고, 수동/자동 옵션선택에 따라 마감 디테일의 차이 및 이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옵션 선택 시 욕실복합환풍기가 설치되며 일반 환풍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선택 시 세대 내 욕실에 제품이 설치되며, 기존의 일반 배기팬의 설치 위치와 상이합니다.(유상옵션 선택 시, 미설치)
- 욕실복합환풍기는 모드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조명안정기의 설치유무, 위치, 방식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4) 조명 등 유의사항

- 조명 옵션 선택 시 조명기기의 이음매가 노출될 수 있고, 조명의 길이 및 이음매의 위치와 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조명기기의 측면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우물천장 길이에 따라 옵션형 조명의 길이 및 이음매의 위치와 수량이 세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명기기의 램프 색온도는 옵션 선택여부와 상관없이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기준 색온도로 설치되며, 그 외 디테일, 하드웨어 등의 사양은 동급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간접조명 (거실아트월, 소파뒷벽, 복도)의 경우, 픽처레일이 함께 등에 부착되어 시공됩니다.
- 조명옵션 미 선택 시 색온도조절 및 디밍제어기능 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제54조 제1항 제2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으로 공급 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① 바닥	<마루(걸레받이 포함). 거실, 주방, 식당, 복도, 침실 <타일, 강화석재> 현관, <장판> 침실 <타일>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바닥	각 실 바닥 미장 마감,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② 벽	벽지, 벽 도장(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거실아트월, 주방벽타일, 욕실벽타일, 복도벽타일, 인테리어 마감, 콘센트, 스위치, 조명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트리트면처리, 콘센트, 스위치 배관배선
③ 천장	천정지, 천정 도장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천정(천정틀, 석고보드), 커텐 박스
④ 욕실	타일(바닥, 벽), 천정재, 석재(천연석 젠다이 등),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욕실환풍기, 콘센트, 스위치,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⑤ 주방	주방가구 :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후드, 가스쿡탑 등 가전제품, 콘센트, 스위치	설비배관,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 배기덕트
⑥ 창호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가틀, 문틈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주방발코니 도어, 대피공간 도어, 실외기실 도어
⑦ 조명기구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
⑧ 일반가구	신발장, 붙박이장, 기타수납장	월패드, 도어폰,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전실)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포함)

약식표기(타입)	84A	84B	116A	116B	134	216P	220P
마이너스 옵션 금액	39,680,000	39,448,000	54,893,000	53,343,000	61,623,000	97,721,000	102,783,000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유의사항 안내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폭목(유상옵션) 선택 계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 시 분양가는 분양대금 총액에서 마이너스 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일괄 선택해야 하며(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 불가),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내,외부 PL창호는 모두 설치되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대한 입주자의 시공, 설치는 잔금을 납부완료하고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토록 해야합니다.
-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구분		내용			
땅 ^무 이	일반사항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병장 또는 마감 사명, 부대권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지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건분주택, 커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당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압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교문 및 공급계약사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교문과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함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 시행정 제3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새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만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허용오차 범위(2%) 내에는 별도의 정신은 하지 않습니다. '새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만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허용오차 범위(2%) 내에는 별도의 정신은 하지 않습니다. '새대리 기공면적, 기업면적 및 대기자원은 법명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즉량으로 인한 대자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경 궁급면격, 계약면적 및 대기자원은 법명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즉량으로 인한 대자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속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속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 시 입주자는 등의하여야합니다. '문이 파트의 내부 구조벽제 제가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만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설내 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수정절계를 입주면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시 해지상 등법 하여 및 서대 상호 각인 항, 3에 따라 망조치, 조망권, 환경권과 상일점을 입부 취해당할 수 있으며, 배치도 상 충수 혼선이 있을 경우 동호수 배치가 우선하므로, 계약자는 동호수 위치를 사전에 충분이 확인한 후 계약을제 검을 다 합니다. '다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하루이가 모든 사업을 보지 부대원의시설 및 조검시설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건본주택 및 인하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주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의 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가동 입면 계획상 설치된 장식품 등으로 인해 일부 세대는 음명 발생 등 일조 점하를 받을 수 있으며, 벌리 및 곤충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기의 업계 계상 설치된 장식을 등으로 인해 일부 세대는 음명 발생 등 일조 점해를 받을 수 있으며, 벌리 및 곤충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각 시설을 가로통, 가로수 등은 궁동주택과 비주거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며 공동으로 관리비를 장산하며, 정산방법에 관해서는 임주인의 협의 의점 점점입니다 및 관리 설치된다 본지로 등의 물의 대한 관리사무소, 입주관리법제 등)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선정하며, 추보 인터, 공약 보안된 기관으로 중입니다. '외부 기상을 가로통 가로수 등은 궁동주택과 비주거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며 공동으로 관리에 따라 보존 사계가 용권 경상 입자 는 나온은 관리에 또한 보안되는 자리에 따라 본수 등의 및 전면지자는 지자 등심상 입장한 우리 나진 등의 대리로 전공하여 관리 본수 무준이 되어야 되는 등의 및 전면지자는 지자 등심상 입장한 우리 나진 등의 대리를 당한 경상이다. '관리 조병을 가는 건강을 되어 된다 된다 관리에 관리 본수 있으니다. '라면 존재하여 결심 보관 등 전상이 되는 보안 관리에 관리 보안 되었다면 보안 되었다면 보안 되었다면 보안 함께 보안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보안 함께 보안 되었다			

구분		내용
땅 구o	일반사항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과정 및 실공사 시 일부 허가도서의 불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구조 상세해석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부재의 단면 및 주근 규격, 배근간격 등의 번경등 품질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까데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층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494호)을 준수하며, 바닥층격음 성능등급은 국가 공인 표준시험동에서 시험한 완충제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등급이므로, 주후 실제 세대의 성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당지 배치계훼에 따라 건물 상호 간섭, 지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조망,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일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 암지 명정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십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주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지 명정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십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주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란생활시설 및 오피스템을 병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막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정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압주반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의공간의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이에 따른 부담비용은 압주만에게 있습니다. · 1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의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압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증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확장을 고려한 평면설계로 견본주택과 설계도, 세대별 유니트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의 대적 주사 서비를 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의 대적 주사 서비를 하여야 합니다. · 각세대의 대적 주사 서비를 하여야 합니다. · 각세대의 대적 유분이 하여야 합니다. · 각세대의 대적 유분이 하여야 합니다. · 각세대의 대적 유분이 하여야 합니다. · 상대자의 경우 성약자 경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세대 중 인접 등 및 인접 단지에 의한 시각적 간섭 발생이 있음을 확인한 후 정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상대자의 경우 등의 자료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주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해사유가 있습니다. · 상점자가 계약체결 시 건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주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해사유가 있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해사유가 있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해사유가 있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는 제약자의 기관하고 기관하고 기관하고 기관하고 기관하고 기관하고 기관하고 기관하고
	인허가	- 각종 홍보물은 2024년 10월 사업계획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사업승인협의(교통계획)에 따라 북측 출입구(근생/오피스텔 차량 주출입구, 아파트 차량 부출입구) 부근에 도로와 인도가 설치되며, 관리주체는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마감재 품목 등은 편집과정 상 오타 및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광장, 공원, 녹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장은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되는 아파트입니다 · 본 아파트는 현장여건,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건축법」, 「주택법」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므로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관청에서 본 아파트 단지의 건설사업에 관하여 실시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사항과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설계변경(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 포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공통	단지 내·외부 여건	- 청주테크노폴리스 건설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타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 경관상세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 식재조성공간, 보행자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대지경계선 안쪽 전면공지는 준공시 공공(청주시청 또는 충북도청)에서 유지관리를 위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근린시설, 주차장시설, 주유시설, 종교시설, 편의시설, 오수펌프장, 통신탑, CCTV탑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대기,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 인근에는 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도로 공사 등의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및 분진,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 내 및 인근의 신설,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도로 선형, 개설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에 및한 인접 대지 레벨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단지 경계부의 용벽 및 사면의 종류, 노출 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지 내 용벽, 산벽 등 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시공 구조상 보강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 점용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용벽, 산벽 등 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시공 구조상 보강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 점용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가 내용병, 산벽 등 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시공 구조상 보강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 점용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기 내용병, 산벽 등 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시공 구조상 보강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 점용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기 내용병, 산벽 등 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시공 구조상 보강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 점용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시업지 및 인근 사업지구 기반시설의 위치, 혐오시설 유무,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 개발 등의 환경에 대해서는 청약 및계약 전사업부지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업지 및 인근 사업지구 기반시설의 위치, 혐오시설 유무,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 개발 등의 환경에 대해서는 청약 및계약 전사업부지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업지 및 인근 사업지구 기반시설의 위치, 혐오시설 등의 등인 인하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인허가를 득한 사항에 적합하게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업지장가가 부지조성 후 매각/기부채납하는 시설부지의 개발 및 시설설립 등의 일정은 관련 기관에서 확정하며,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광역도로 및 광역교통망 등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	- 단지 내부를 가로지르는 보행통로, 공개공지 및 단지의 4면이 도로에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단, 허용오차 범위(2%) 내에는 정산하지 않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휀스 (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 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지 내 옹벽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당 사업지 인근에 청주공항 및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이착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항공기 관련 소음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학교	① 유치원: 제7권역* 공립유치원 분산 배치 (*제7권역: 봉덕초병설유, 봉명초병설유, 솔밭초병설유, 운천초병설유, 증안초병설유, 직지초병설유, 진흥초병설유, 청주내곡초병설유, 흥덕초병설유) ② 초등학생: 새터초등학교 임시배치(現 통학구역 청주내곡초등학교 배치 불가) ③ 중학생: 청주 제2중학교군 내 분산배치 ④ 고등학생: 청주시 및 도내 전체 고등학교 지원 분산 배치

구분		내용
		· 테크노폴리스 S4블럭은 現 통학구역인 청주내곡초등학교에는 학생배치가 불가능하며, 신설학교 설립 전까지 인근 학교(새터초등학교)에 개발사업 유입학생 전체를 임시 배치합니다. · 학생 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및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등학교의 일반고 학군 학생 배정방법은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내 학생 배정방법을 따릅니다.
단지 동	병현항	- 각 등의 일부 세대는 자랑 및 보행자 동행으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보찬스의 약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401등, 402등 근방 지상 1층에 작은도서관, 경로당 및 403동, 404등 지상 1층에 근관생활시설, 402등, 403등 사이에 어린이집, 단지 중앙 온살파페 내에 다양께돌봄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저층 세대에서는 각종 소음(생활소음, 부대시설 옥상 설외기 등)과 실외기 가라막 등으로 인한 시각적 간섭, 옥상 점검사다리 등으로 인한 시장철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03등, 404등은 하부에 판매근린생활시설 설치로 각종 소음(생활소음, 근린생활시설 옥상 설외기 등) 및 진동, 분진, 냄새와 옥상 실외기 가라막, 옥상 점검사다리 등으로 인한 시각적 간섭,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01등 지상 1층 열린도서관, 402등 지상 1층 경로당, 403등 근생학지상 1층에 어린이집, 403등, 404등은 근방 지상 1층에 온실카페, 각 등 지하 1층에 관리사무소(주가, 비주가, 공통주택 부대시설(종)타니스 실내골관량, 탁간스테이션, 온실카페) 및 오피스텔 부대시설 (염린도서관, 휘트니스)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저층 세대에서는 각종 소음(생활소음, 부대시설 옥상 설외기 등)과 실외기 가라막 등으로 인한 시각적 간섭, 옥상 점검사다리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03등, 404등은 하부에 판매시설 설치로 각종 소음(생활소음, 근대생활시설 옥상 설외기 등) 및 진동, 분진, 냄새와 옥상 실외기 가라막, 옥상 점검사다리 등으로 인한 시각적 간섭,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03등, 404등은 하부에 판매시설 설치로 각종 소음(생활소음, 근대생활시설 옥상 설외기 등) 및 진동, 분진, 냄새와 옥상 설외기 가라막, 옥상 점검사다리 등으로 인한 시각적 간섭,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피스텔, 근라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용 공호기 및 실외기실 설치로 인해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02등과 402등 사이, 402등과 403등 사이 하부에 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되어 이로 인해 소음(자랑은행, 주차관제 등) 및 진동,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01등과 402등 사이, 402등과 403등 사이 하부에 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되어 이로 인해 소음(자랑은행, 주차관제 등) 및 진동,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5 등 주변에 기타 급배가용 DA(DIC) 사업을 및 지하주차장 채광을 위한 탐라이트 등 외부시설은 단지배치도를 참조 바랍니다. 사업증인 및 분양 후 DA등의 기타 외부시설의 위치, 크기, 개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5 등 자연의 유입하다. 46 등과 402등 사이 주차장 출입구가 등 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존문로 인해 세대 조망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7 등과 402등 사이 주차장 출입구가 등 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 및 택하의 발려하여 보다 위치, 크기, 개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7 등의 주출입구는 주변 여전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호 형식 등이 동생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40 등의 수원 수있습니다. 40 등의 수입을 사업하다가 접근 분가할 수 있습니다. 40 등의 주읍입구는 주변 여전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호 열시 등이 동생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52 부 등은 주변 건물 및 구조를, 단지 내 인접등 및 같은 등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0 등의 수집을 하다가 점심을 사용하다가 없는 등이 목생으로 가장되어 가장되어 보다 등 상에는 관련 법과가 있는 수 있습니다. 52 부 등은 주변 건물 및 구조를, 단지 내 인접을 및 같은 등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질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2 부 등은 주변 건물 및 구조를, 단지 내 인접을 및 같은 등 다른 라인에 가장 기상을 보다 기상을 보다 있습니다. 52 부 등은 주변 건물 및 구조를, 단지 내 인접을 및 같은 등 다른 라인에 가장되어 되었다. 53 부 등

구분	내용
구분 단지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	배치도의 대지경계신, 구역경계선, 법변현함은 최종 축당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하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이건에 따라 단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배지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안하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여건 및 상용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배지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안하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여건 및 상용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배지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안하가 과정, 법규 보경, 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식품, 주자류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지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안하가 과정이 보기

구분	내용
외관계획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출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저충부는 페인트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페인트 등 기타 자재의 적용비율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지 문주는 단지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사업주체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특히 측벽 강조디자인 등),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401동, 404동의 경우 단지 상품성 강화를 위해 옥탑 강조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악파트 옥상 및 외벽에 조형물 및 로고(BI)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는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낙수 등으로 인한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옥상 용백파라뗏 및 의장용 구조물은 구조검토에 의하여 높이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왕자법 및 항공법 시행규칙에 의거 건물 옥상층과 건물 외벽에는 항공장애등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이로 인하여 주간이나 야간에 눈부심이나 조망권, 환경권이 침해될 수있습니다. 또한 지방항공청과 협의과정에서 위치나 수량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 수거시설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 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커뮤니티시설 등의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및 설치범위는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특화설계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최대 24개월까지(상황에 따라 단축될수 있음) AS업무를 위한 사우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 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주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로당 및 보육시설의 난방 급탕을 위한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조망권, 소음, 진동, 열기,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입점 업종에 따라 냄새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외기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관리사무소, MDF실, 방재실 등은 공동주택,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이 분리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커뮤니티 내 주민운동시설의 운동기구 구성, 수량 및 SPEC은 당사 기준에 따라 설치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다지의 부대시설은 주거(공동주택)와 비주거(오피스텔 및 판매시설)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다의 부대시설은 주거(공동주택)와 비주거(오피스텔 및 판매시설)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공동주택) 시설별 위치 401동 지상1층: 열린도서관, 독서실 등 403동 지하1층: 관리사무소, 피트니스센터, GX롬, 실내골프장 등 지상1층: 아립이집, 온실카페,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상1층: 아립이집, 온실카페,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상1층: 안심과, 대한제를본센터 등 지상1층: 연리이집, 온실카페,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상1층: 안심과를, 마스스테이션 등 단지 내부 및 주민공동시설은 지역민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계획될 수 있어, 단지 외부인과 공유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용설비 시스템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 및 기계전기실에 설치되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AMR)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등 동파우려 배관에는 배관 동파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제조사 및 SPEC(속도, 인테리어, 버튼방식 등)은 당사 기준에 따라 설치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카 내부 버튼은 모든 연령층의 사용성을 위해 층별 물리버튼 방식으로 구성되어 버튼이 많아보일 수 있으나(최고 49층)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계실, 휀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엘리베이터 및 기계전기실에 설치되는 시설 및 장비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특정 제품(브랜드)의 설치를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동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개수, 사양, 용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보안등 시설물로 인해 일부 실의 경우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 지하주차장 천정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총 1,338대(공동주택 1,63대, 오피스텔 247대, 근린생활시설 28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 주차출입구는 총2개소이며 1개소는 독립형 나머지 1개소는 오피스텔/판매시설 주차출입구와 같이 구획되어 있으나 차선은 별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지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등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주차장은 401, 402, 403, 404동 하부 지하 2층~지하 3층이며, 401, 402동 하부 지하 1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주차장으로서 공동주택 압주민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주차구획은 지하23층,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지하1층으로 지하에서 층을 기준으로 나뉘어져있고 지하에서 각 구역으로 통행 불가하니 필히 확인하신 후 계약바랍니다. · 각, 주차장 출입구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동 지하층 및 옥탑 구조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법규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차 화재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 등 이의를 시행사 및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은 열관류을 기준에 의거 단열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차 화재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 등 이의를 시행사 및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은 열관류을 기준에 의거 단열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소의 사용요금 및 전기 기본료는 사용자 부담 방식으로 요금 납부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기본료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호실 면적에 따라 균등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계획되었으며, 추가적인 충전시설(충전소, 이동식충전기 등)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 향후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함재 등)를 위하여 위치 및 구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자하주차장 내 주차유도시스템은 당사 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 시설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지상의 경우 아파트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단지 내 지상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인접세대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동에 일조권, 조망권, 소음진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01동, 402동 지하1층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 시설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주차장은 공동주택(아파트) 주민의 이용이 제한 됩니다. 지하주차장은 층별로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 공동주택 구역이 구분되어있고 지하에서 다른 구역으로 이동 불가하니 참고하시어 계약 바랍니다.

구분		내용
단위세대	평면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 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정 높이는 사업승인상 2320mm으로 허가받았으나, 설비배관 등 시공여건에 따라 허용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세대 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단위세대 현관, 현관창고,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보일러실(다용도실) 등에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확장세대 옆 비확장세대가 위치할 경우 단열등의 추가 설치로 해당 세대의 실사용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욕실2의 경우 재료분리를 위한 최소한의 단차가 계획되어 있어 슬리퍼를 사용할 경우 문결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건식개념으로 입주민 편의를 위한 계획으로 향후 이로 인한 하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욕실2 현관/발코니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1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욕실2의 샤워부스에는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며, 바닥레벨은 물넘침 방지 및 배수를 위해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2에 바닥난방이 설치됩니다. (욕조하부 및 샤워부스 제외) · 1168 type은 주방에 구조내력물인 기둥이 설치되어있습니다. · 건식욕실 관리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용자의 인식부족, 부주의, 오사용, 관리미흡 등의 사유로 시행자, 시공사에게 발생된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발코니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일부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정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환기 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정에 택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정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재 등 유사시에는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여야 합니다.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하향식 피난공간 마감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소방법에 의해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세대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최하층세대 및 필로티 상부세대, 부대시설 상부세대는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음) ・하향식피난구의 크기 및 위치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향식피난구 및 전열교환기는 세대당 1개소 설치되며 위아래 교차시공 됩니다.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의 습식단차구간은 사용자편의성 개선, 하자예방 등의 사유로 실시공시 사업승인도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변체 하부에는 백체내구도 항상, 하자예방의 목적으로 걸레받이, 걸레받이페인트 등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수망 발코니 천장은 도장마감으로 시공되며, 최상층의 경우 ABS천정으로 시공됩니다.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의 출입문은 일반PD도어가 설치되며 자재의 특성상 기밀하지 않음으로 틈새를 통한 온냉기의 유입, 유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창호	 저층 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확장 시 아파트 외부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추후 검토에 따라 거실 창호 하부 보강 바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 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현장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입별로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설치) 위치가 상이한 관계로 창호 높이 및 천정의 형태,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리난간은 각실 설치되며, 철재로된 투시형난간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철재로된 투시형 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리난간 구조변경, 파손, 임의조작, 고정철물 제거 등 사용자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시행사, 시공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구 및 마감재	 분박이 가구(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정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한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수 있습니다.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정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체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 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베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약체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장호, 시트판별 등의 고정을 위해 타카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데 건조기 사용시 온도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걸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욕실장 및 샤워부스의 디자인 및 디테일은 본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선반은 본공사 시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다. 현관증문 및 유리도어 (유상옵션)은 본 공사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적용되는 자리를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적용되는 대형타일 및 석재 등의 마감재는 재료적 특성상 인접타일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차이, 자연무늬(베인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람정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주방가구, 냉장고장,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확장시 제공되는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공간옵션 등에 따라 타입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용 부위가 상이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옵션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가구 하드웨어(힌지 및 레일 등)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옵션 중복선택으로 인한 자재증감 비용변동은 없습니다. 냉장고 상부장은 사용성개선, 내구성향상, 하자예방 등의 사유로 하드웨어, 손잡이디자인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내 타일 줄눈은 시공 및 사용자환경에 따라 탈락, 오염, 변색, 이색 등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내 천정에는 조명, 소방설비, 감지기, 스피커, 환기구, 에어컨 등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는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 설치방향, 간격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전기기계 설비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욕실에는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편, 천정 점검구의 위치 및 사양,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에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시공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세대 내부의 욕실단자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공병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기 디큐져, 가스배관 및 제광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한기 디큐져, 가스배관 및 제광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인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설치 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으니 유익하시기 바랍니다 오르리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건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본 공사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용, 우물전형, 커른박스, 만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방병에 가스일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레랑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욕실, 드레스룸,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침실의 옵션선택에 따라 드레스룸 및 펜트리로 변경될 경우 온도조절기는 설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세대 주방에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가 설치되어 따라, 하부장에 관련 설비가 설치되면 수남장으로 사용활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라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라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나타보임시설 인접 및 상부층 세대는 소음 발생으로 사용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피트층, 피난증의 인점층 및 최상층은 방난방의 효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1층 부대복리시설 인접 및 상부층 세대는 소음 발생으로 사용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피트층, 피난증의 인점층 및 최상층은 방난병의 효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1층 대대 선진반 전형 및 장수를 제어 관심을 시원 후에 우려가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피트층, 피난증의 인점층 및 최상층은 방난병의 효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1층 대대 전기본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교 제2023-839호) 23.284에 의거하여 집설벽 등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다다 각 세대 내 전기본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교 제2023-839호) 23.284에 의거하여 집설벽 등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다다 각점에 선지 건보 및 참설에는 스탠드형 및 백부형 냉매배관이 설치됩니다 각 설의 전기는 기본용량만 공급하며, 입주 후 전기용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변경공사를 진행하고, 관할 지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층 후에 전에 사용하는 대용량 전염기로 인해 소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정 전염이 가입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주방 벽, 욕실 벽 / 바닥 및 다용도실 바닥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주방 상판, 주방 벽, 아트월, 현관 디딤판의 가공석의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사양(색상, 사이즈), 제조사,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상판, 벽 타일 / 지정 가공석재(세라믹타일<유상옵션>), 인테리어성 마감재(거실아트월, 가구판넬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견본주택 설치되어진 실외기 그릴창 및 벽체는 일부 형태, 위치, 크기, 높이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기 급기, 배기 설치위치에 커튼박스의 형태 및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어진 창호 형태, 위치, 사양 및 하드웨어 등은 본공사시 변경 될 수 있며, 난간대 안전성 검토에 따라 높이 및 사양이 변경됨을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 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 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져,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템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소방법령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므로 본 공사시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환기디퓨져 및 세대내 스피커는 본공사 시 사업계획 승인도서 기준으로 설치되오니 별도 확인바랍니다.
견본주택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84B, 116B, 216P, 220P 타입)은 건립되어 있는 84A, 116A, 134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되나, 타입별 마감자재 정보는 별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사양, 갯수, 설치 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견본주택 단위세대 조명은 견본주택에서 보여지는 색상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가구 내에 설치되는 조명의 색온도는 일반 조명의 색온도와 다를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 의 외부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 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에 설치되는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 제5항 및「사이버 견본주택 운용기준」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로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후 사이버 견본주택 관련 추가 시정조치 등을 사업주체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시용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본 공사시에도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또한,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상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 견본주택 내 표기된 기본형 제공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 유상옵션품목을 제외한 품목을 말합니다.

12 기타

※ 아래의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사업부지 및 건설예정인 건물은 사업주체에서 부가가치세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받아 대지비를 산정하였으며, 같은 타입의 세대별로 대지지분은 같더라도 대지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본 공고에 규정된 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 분양계약자에게 본 계약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위탁자와 수탁자간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제반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자는 수탁자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수탁자는 분양계약과 관련한 매도인(공급자)으로서의 제반 의무(공급금액 반환, 지체상금 배상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음)를 현존하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책임범위에 따라 위탁자 또는 시공사에게 있음.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검사전 발생하자 포함)은 시공자인 (주)두진건설이 수행함.
-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설계비, 감리비 및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 해당 분양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분양계약 이후 근린생활 시설 및 공동주택 간에 전용 면적 변경 시에도 상호간의 대지지분 증감은 없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 증감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 시 위치 및 종류는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옵션포함)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 이므로 홈페이지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홈페이지의 VR동영상 및 사이버모델하우스 영상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전에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일자에 따라 당 모집공고와 다소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며, 기본품목(분양가포함품목)외 선택품목, 전시품목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과 무관한 사항임.
- 본 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 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시공·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된 관리주체에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함.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 완료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자가 분양을 받을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 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허가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해당 사항을 본인의 책임으로 확인 및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을 이유로 사업주체에 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별도의 대지 경계선으로 구획되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및 대지의 관리는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 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전면 가로에는 인허가 및 기타 여건에 의해 가로수가 설치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6812024-101-0000900 호	₩ 241,308,600,000 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제 1 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화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중

제 2 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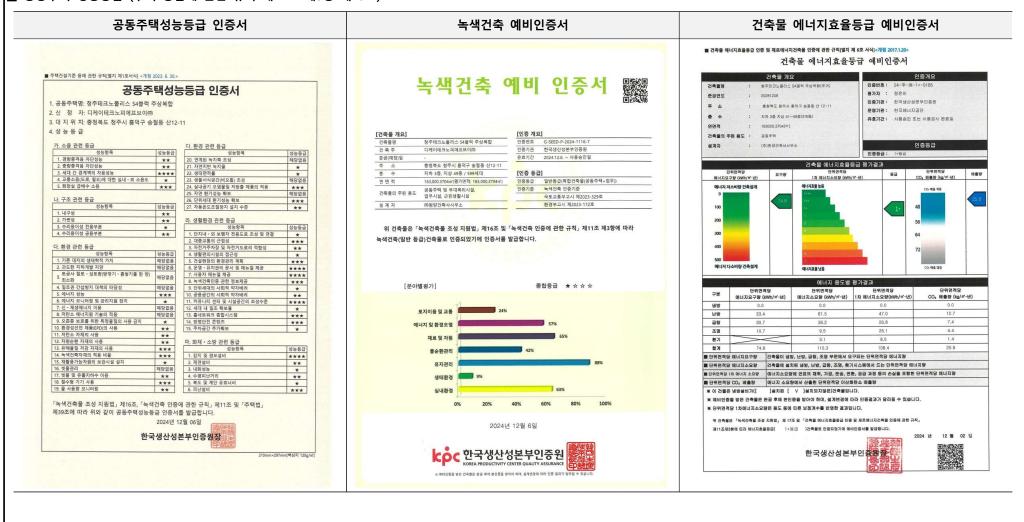
제 4 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함.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음
- ※ 공동주택 공사진행 정보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공급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
- ※ 기타사항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람.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공동주택 성능등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호)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설계기준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제7조 제2항 제1호)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전기부문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설계기준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제7조 제2항 제3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해당없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4호 삭제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 본 주택은「주택법」제57조 및「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 분양가격 공시내용

(단위 :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구분	금액
		택지공급가격	34,695,740,279			철근콘크리트공사	48,235,270,517			위생기구설비공사	1,483,816,626
택지비	기간이자	2,361,789,774			용접공사			기계	난방설비공사	1,158,520,681	
	필요적 경비	1,849,332,441			조적공사	1,298,628,222			가스설비공사	570,840,964	
		그 밖의 비용	18,451,642,244			미장공사	2,035,687,760	공 사	설비	자동제어설비공사	991,875,260
		계	57,358,504,738			단열공사	2,193,628,977			특수설비공사	
		토공사	4,966,375,485			방수, 방습공사	1,561,864,109			공조설비공사	
		흙막이공사				목공사	1,105,589,307			전기설비공사	13,829,266,000
		비탈면보호공사				가구공사	4,747,368,346	비	그밖 의	정보통신공사	5,412,384,660
		옹벽공사	965,196,939			금속공사	3,017,723,451		의 공종	소방설비공사	9,790,228,314
		석축공사	1,491,667,925		건 축	지붕 및 홈통공사	982,745,788			승강기공사	1,702,682,535
		우수, 오수공사	754,608,387	공	'	창호공사	6,861,671,666		그밖의	일반관리비	7,119,005,863
	토 목	공동구공사		사 비		유리공사	2,720,099,963		공사비	이 윤	7,877,010,089
고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438,725,953	-1		타일공사	2,948,095,344			계	170,658,052,981
공 사		도로포장공사	1,193,334,340			돌공사	4,304,328,163	간 접 비	설계비		6,577,820,102
비		교통안전시설물공사	245,686,250			도장공사	2,175,511,262		감리비		6,503,469,854
		정화조시설공사				도배공사	1,615,221,541		일반분양시설경비		16,181,316,735
		조경공사	4,036,277,822			수장공사	4,422,356,440		분담금 및 부담비		4,733,971,194
		부대시설공사	1,017,844,274			주방용구공사	5,353,875,874		보상비		
		공통가설공사	4,439,905,288		기 계 설	그 밖의 건축공사	975,463,355		기타사업비성 경비		30,196,266,242
	건	가시설물공사	1,895,295,392			급수설비공사	975,037,297			계	64,192,844,127
	축	지정 및 기초공사	298,333,585			급탕설비공사	650,166,621		그 밖의 비용		29,535,398,154
		철골공사			비	오수,배수설비공사	798,836,346		-	합계	321,744,800,000

■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의거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 「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원)

	항목	금액		항목		금액
	법정 택지이자	2,361,789,774		구조형식 기	가산비용	244,738,606
			건축비 가산항목	법정초과 복리	1,895,335,401	
	제세공과금	1,849,332,441		인텔리전트 설비 공사비	홈 네트워크	6,289,290,000
					정보통신특등급	2,808,415,000
	말뚝박기 공사	8,850,075,000			에어컨냉매배관	4,402,716,000
					기계환기설비	2,499,881,000
택지비	암석지반 공사비	1,581,309,000		공동주택성능등급		1,900,686,040
가산항목				에너지절약형 친	2,916,908,858	
			_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748,795,000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7,151,232,000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789,959,000
	택지와 관련된 경비	869,026,244		법정 개정에 따른 가산비	피난안전구역 및 피난용승강기 설치비	3,621,753,000
				분양보증	수수료	1,417,050,488
	소계(택지비 가산항목)	22,662,764,459		소계(건축비 가산항목)		29,535,528,393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주)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	청목플러스(주)	(주)한석소방이엔씨	(주)부흥이앤씨
감리금액	3,638,305,000원	1,118,375,896원	1,169,102,821원	135,300,000원

■ 사업주체 현황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주체	디케이테크노피에프브이(주)	150111-035341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14, 3층(신봉동)
사업구세	(주)두진건설	150111-005570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14(신봉동)
시공사	(주)두진건설	150111-005570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14(신봉동)

■ 홈페이지 주소: techno.heartrium.co.kr

■ **견본주택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326번지

■ 대표번호: 043-225-9177

- ※ 본 견본주택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건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 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